

< 목 차 > 1 >

---

#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

---

2014. 3. 13.



## II.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및 방안

### 〈 정책목표 및 방향 〉

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 } 경쟁력 강화  
 금융현장체감 규제개선 } 부가가치 제고 → 투자·일자리 창출  
 · 국민불편 해소

- ◇ 금융규제를 '08년 이후 5년만에 전면 점검('14년)하고, '15년 이후 매년 상시적으로 수요를 발굴(Bottom-Up)·정비
- ◇ 중소·벤처기업·창업자 등 금융이용자, 금융회사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「숨은규제」를 「민원분석, 서베이」등을 통해 개선
- ◇ 영업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, 건전성, 소비자보호, 개인정보 등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되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도록 합리화

### 가 | 법령상 규제 원점 재검토 (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틀 속에서 추진)

- (규제 List 작성·관리) 금융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직·간접적인 규제(경제적 규제)를 선별하여 「금융규제 목록」을 작성
- (개선방안 검토) 목록상 규제에 대해 규제폐지/네거티브 방식 전환/규제완화/일몰설정/유지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 마련
  - \* '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강화된 규제들이 현재 상황에서도 존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
  - 특히, 업무영역, 신상품 개발, 채널, 자산운용 분야의 Negative 규제 전환 검토 및 자본·보험 분야 덩어리 규제 일괄 정비 등
- (추진일정)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논의·발표 예정
  - 3월 : 규제개혁 기본계획
  - 6, 9월 : '법령상 규제 원점 재검토' 방안 발표

## 나 | 금융현장 숨은 규제 개선

### (가) 검토대상

#### ① 금융회사에 대한 지침·지도(전화지도)·규제 등

- **금감원**의 행정지도, 실무해석·의견, 해설서·매뉴얼 등, **협회** 주관으로 만든 모범규준, 가이드라인, 업무처리방안 등

#### ② 금융공기업 등의 내규\* 등

- \* 자체 기관의 인사·보수 규정 등 내부행정 사항이 아닌 이용자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규정, 업무처리지침, 세부세칙 등
- 이용자에게 **공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** 규제위 같은 **제3의 기관의 점검을 받지 않는 기관\***이 대상
- \* 금융공기업 : 신보, 기보, 정금공, 예보, 캠프, 주금공  
공공적 성격의 기관 : 산은, 기은, 금융결제원, 보험개발원  
증권유관기관 : 거래소, 예탁결제원, 증권금융, 코스콤

### 《금융현장 숨은규제 선정기준 제시(예시)》

- ① 영업규제, 상품개발 등 분야(Positive 규제)
- ② 불편하거나 과도한 자료, 문서, 서류 요구 관행(문서규제)
- ③ 불공정하게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(甲乙규제)
- ④ 수수료·출연금(부담)이 적절한 비용 구조인지 검토(비용규제)
- ⑤ 사회적 약자 등 이용자간 불합리한 차별 시정(차별규제)
- ⑥ 각종 지원 기준(대상자 선정 등)의 합리성, 타당성 검토(기준규제)
- ⑦ 규제신설 이후 상황 변경에 따라 개선 필요한 규제(낡은 규제)

## [나] 추진방식

- ① (추진체계)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·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TF를 구성하여 기관장 책임하에 숨은규제 개선 작업 추진
  - 또한 TF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사전에 신설·변경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
- ② (숨은규제 List) 모든 규제,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방법상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목록화
  - 목록에 있는 규제·불편사항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일괄 10%를 개선(폐지, 완화, 합리화 등) 추진
- ③ (Bottom-Up방식) 민원분석, 이용자 대상 조사(Survey)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·불편해소
  - ※ 기관 자체에 규제·불편개선을 일임하는 경우 적극성이나 현실성이 낮으므로 규제대상·수요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파악할 필요
  - (민원분석) 기관별 과거 3년간 민원을 모두 조사하고 유형별로 정리하여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
    - 특히 금감원은 '검사보고서'를 분석하여 지적, 유의, 개선사항 등을 유형화 → 개선과제 발굴, 규제준수 비용 절감
  - (수요발굴) 금융회사, 해당 기관 이용자에 대한 현황파악·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
    - \* 각 협회→금융회사, 중기중앙회·벤처협회→중소·벤처기업, 창업자

## [다] 추진일정

- 3월 : 「금융현장 숨은 규제」 목록 List, 기관별 TF 구성
- 4~5월 : 민원분석·서베이 실시, 기관별 목록 정비(10%개선) 방안
- 6월 : 종합 개선방안 마련

**3.11일 협회, 금융공기업, 연구원, 중기·벤처협회 등 26개 기관과  
규제개선 회의시 지적된 숨은규제 등 사례(추후 검토예정)**

- ① **Negative** 규제 전환과 관련해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
- ② 새로운 업무 개발시 은행과 증권이 겹치는 분야(Gray Area)를 전향적으로 허용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 제시  
→ 유니버설 बैं킹, 권역간 칸막이 제거와 같은 큰 그림하에 규제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
- ③ 모범규준, 가이드라인 등은 만들 당시 필요했지만, 「상황이나 여건이 바뀌어」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
  - 해설서는 규정을 명확히 하므로, 규제비용 절감 가능
- ④ 금융감독원의 업무방식 변화, 검사보고서 조치 사항 유형화·합리화로 금융업계에 실질적 도움 가능
- ⑤ 사실상 공인인증서 사용이 강제되고 있는데 간편결제를 어렵게 하고 국제 온라인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다양화 필요
- ⑥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 표준규정에 따라 개인의 프리워크아웃은 허용되어 있지만 법인은 금지

⑦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보증금지대상 기업을 법에서 보다 기관내규에서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여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증심사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존재

→ 보증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되, 기관 내규를 법에서 정한 수준으로 합리화

⑧ 예비창업자는 아이디어·개발초기 기술만 있는 경우가 다수인데, 이 경우 기술완성도에서 최하등급이 되어 보증을 받기 어려움

→ 예비창업자에 대한 평가모형을 만들어 담보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, 훌륭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를 지원

⑨ 재기지원보증 대상을 구상채무 원금감면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원금감면 없이 분할상환중인 기업은 오히려 지원대상에 배제

⑩ 정책자금 지원시 획일적인 기준(ex. 매출액, 재무비율 등)을 적용하여 정책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존재

⑪ 창업초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로부터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기계적으로 상승하여 정부R&D 자금지원 자격 충족에 애로